

문서관리번호	2026 – S- 04
최초 제정일	2023.12.1
최신 개정일	2026. 2. 1
문서관리부서	환경안전팀

분쟁광물(책임광물) 정책

Conflict Minerals (Responsible Minerals) Policy

2026. 2. 1.



1. 선언

유성기업은 자사의 경영 활동과 공급망 운영이 인권과 환경에 잠재적 또는 실제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은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공급망 전반의 이행 수준을 점검하며, 이해관계자 및 공공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책임이 있다.

유성기업은 자사의 경영 활동과 공급망 전반에서 윤리적인 기업 활동을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 이와 같은 약속은 인권 침해, 환경오염 및 훼손, 불법적인 거버넌스와 연계된 원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아울러 유성기업은 원자재의 조달 및 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환경적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관리한다.

유성기업은 원자재에 대해 적절한 실사를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분쟁지역 광물의 책임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 가이드라인(the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다국적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협약」,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을 포함한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하여 이행한다.

유성기업은 원자재 공급망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위험을 식별, 평가, 예방, 완화, 시정하기 위해 위험 기반의 지속적이고 선제적이며 대응 중심적인 실사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한다. 유성기업은 책임 있는 광물 조달 관행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공급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적용 범위

유성기업은 책임광물 정책(이하 “본 정책”)은 유성기업의 책임 있는 광물 조달에 관한 약속, 원칙 및 지향하는 기준을 규정한다. 유성기업은 모든 협력사 및 하위 협력사가 자사

의 사업 운영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 본 정책의 약속과 원칙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

본 정책은 유성기업 및 그 계열사와 자회사(이하 통칭하여 “회사”)가 제정하며, 회사 전체에 적용된다.

본 정책의 적용 대상 원자재에는 분쟁광물(주석, 탄탈럼, 텅스텐, 금)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책임광물이 포함된다.

3. 관련 정책

본 정책에 명시된 책임 있는 조달에 대한 유성기업의 약속은 「협력사 행동규범(Supplier Code of Conduct)」을 통해 뒷받침된다. 「협력사 행동규범」은 유성기업의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가 자사의 사업 운영과 공급망 전반에서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책임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며,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유성기업은 또한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광물 조달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있는 원부자재 조달 정책(Responsible Raw Materials Procurement Policy)」, 「인권 정책(Human Rights Policy)」,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정책(Supply Chain Sustainability Management Policy)」 등의 운영 정책과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정책」은 유성기업 운영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수행하는 참여 및 역량 강화 활동, 책임 있는 조달 실사의 이행 등을 지원한다. 유성기업의 정책들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업 운영을 위한 기타 모든 사내 정책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4. 책임있는 광물 조달 원칙

유성기업은 실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에 제시된 책임 있는 조달의 핵심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원칙은 유성기업의 모든 사업 운영에 적용되며, 본 정책의 적용 대상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사 및 하위 협력사 역시 자사의 운영과 전(全) 공급망에서 위험 기반의 적절한 실사를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협력사 및 하위 협력사는 관련 법령과 기준의 범위 내에서 해당 원칙에 부합하는 조치를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약속에 따라 유성기업은 협력사에게 「협력사 행동규범」과 본 정책의 준수를 요구한다. 유성기업은 윤리, 환경, 인권·노동, 안전·보건 등의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매년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 및 실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한다. 현장 실사 대상은 협력사 소재 국가, 산업군, 제품 유형, 사전 평가 결과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따라 선정된다. 리스크가 식별될 경우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을 통한 감사를 수행한다. 감사 결과는 협력사에 공유되며, 협력사는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조치계획(Corrective Action Plan, CAP)을 제출해야 한다. 유성기업은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정책」에 따라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사를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유성기업의 핵심 원칙에 따라 협력사가 강제노동 또는 아동노동 등 중대한 인권 침해와 연관된 제련소·정제소와 거래하거나, 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유성기업은 책임 있는 조달에 대한 유성기업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보유한다. 또한, 유성기업은 본 정책의 핵심 원칙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사와 체결하는 계약 및 합의서에 본 정책을 반영한다.

가. 사회적 책임

① 중대한 인권 침해

유성기업은 공급망 내 어떠한 형태의 중대한 인권 침해도 용납하지 않는다. 유성기업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행위에 연루된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특히, 유성기업은 원광물 조달 과정과 전반적인 가치사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유성기업의 이러한 약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i. 고문,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학대
- ii. 차별, 성희롱 및 성폭력 등 기타 중대한 인권 침해
- iii. 전쟁, 집단학살 등 국제 인권법에 반하는 비인도적 범죄 행위

② 강제노동

협력사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국가의 모든 적용 가능한 노동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노동자의 자유 의지를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해야 한다. "강제노동"이란 ILO 협약 제 29 호에 따라, 노동자가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 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ILO 협약 제29 호 2 조에서 금지하는 채무 담보 노동, 인신매매, 노예 노동, 수감자 노동 및 노동자의 이직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성기업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행위에 연루된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유성기업은 원광물 조달 과정 및 전(全) 가치사슬 내에서 강제노동과 관련된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아동노동

유성기업은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용납하지 않으며, 원광물 조달 과정 및 전(全) 가치사슬 내에서 아동노동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국제노동기구(ILO) 제 138 호 및 제182호에 따라, 유성기업은 만 15세 미만 아동의 고용을 금지하며, 만 18세 미만 아동이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아동노동의 위험이 식별될 경우, 협력사는 즉시 해당 고용을 중단하고 이를 지체없이 유성기업에 통보해야 하며, 시정 조치와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적절한 개선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④ 차별 및 괴롭힘 금지

유성기업은 사업장 내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하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안전하고 건강하며 포용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성별에 기반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유성기업은 모든 거래업체가 관련 국가법 및 국제법, 규정, 기준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

⑤ 결사의 자유

유성기업은 본 정책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대규모 이동, 정리해고 등 경영 상의 이유로 인력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 현지 법에서 규정한 근로자 사전 협의 기간 내에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진행한다.

⑥ 고용의 다양성 존중

유성기업은 사업 운영 전반에서 고용과 근로에 있어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안전하고 건강하며 포용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유성기업은 모든 거래업체가 관련 국내외 법률,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

⑦ 근로시간, 임금 및 보상

유성기업은 공정한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및 보상을 보장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포용적인 근무 환경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유성기업은 모든 거래업체가 관련 국내외 노동법,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

⑧ 안전보건

유성기업 및 협력사는 모든 관련 보건·안전 법령 및 산업 표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제공해야 한다. 사고, 부상 및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⑨ 무장단체(Security Forces)

유성기업은 광산 지역, 운송 경로 등을 불법적으로 통제하거나, 공급망과 관련하여 강탈·불법 과세를 일삼는 공공 또는 민간 무장단체, 비국가 무장단체 또는 그



연계 조직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직·간접적 지원(Direct or Indirect Support)'도 용납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해당 주체로부터 광물을 구매하거나,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거나, 물류 지원이나 장비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무장단체가 배치되는 경우, 유성기업은 「안보와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Voluntary Principles on Security and Human Rights)」의 전면적인 준수를 요구하며, 협력사가 중대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개인 또는 조직이 고용되지 않도록 선별 절차를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유성기업은 공공 무장단체에 대한 금전 지급의 투명성, 비례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특히 소규모 채굴자(artisanal miners)와 같은 취약계층이 무장단체 배치로 인해 인권 침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무장단체와 관련하여 중대한 인권 리스크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관리 계획 수립 후 6개월 이내에 적절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성기업은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⑩ 지역사회 및 원주민 권리

유성기업은 사업이 운영되는 지역사회에서 여성 및 소수집단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유성기업은 지역원주민 및 기타 소외된 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학대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으며, 이를 지지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는다. 유성기업은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에 따라 지역사회 및 원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원주민 거주지에서 자원을 개발하거나 채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인지동의(FPIC,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를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협력사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유성기업은 모든 사업 활동에서 지역사회 및 원주민의 건강, 안전, 생계를 고려한다. 유성기업은 대기·수질·토양 오염, 산림 훼손,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민감 지역에서의 수자원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대응 조치를 취한다. 또한 토지 강탈, 불법 퇴거, 문화적 또는 의례적 장소의 파괴와 같은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유성기업 모든 사업장에서 환경적으로 책임 있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운영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협력사 또한 이와 유사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⑪ 인권 옹호자

유성기업은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인권 옹호자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모든 비즈니스 활동은 인권 옹호자가 그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협, 협박 또는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유성기업은 자유로운 대화와 표현이 가능한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념하며, 협력사 또한 동일한 원칙을 준수하여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옹호자가 존중받고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나. 환경적 책임

유성기업은 원부자재의 조달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 간접적, 유도적 및 누적적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또한 사업 운영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자원의 효율적 사용,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환경 훼손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환경 피해를 완전히 회피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 및 복원 조치를 추진한다.

①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사용

유성기업은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 사업장 전반의 에너지 성능 개선, 기후 관련 목표 수립 등을 추진한다. 모든 운영 계획에 에너지 요소를 통합하며, 친환경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유성기업은 협력사 또한 자사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 및 감축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생에너지 또는 환경영향이 낮은 에너지를 도입할 것을 장려한다.

②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유성기업은 고도화된 배출 저감 기술의 도입, 운송 및 물류의 최적화, 엄격한 배출 기준의 준수를 통해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유성기업은 배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및 대기질 개선 목표에 부합하는 개선 활동을 추진한다. 협력사는 제조, 운송, 에너지 사용 등 전 과정에서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사 운영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오염 저감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③ 폐기물, 유해물질 및 순환자원 활용

유성기업은 책임 있는 폐기물 관리, 유해물질의 철저한 통제, 자원의 순환적 활용을 통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다.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가능할 경우 제조 과정에 재투입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외부 재활용을 적극 장려한다. 유해물질의 단계적 사용 중단, 자원 효율성 향상, 재활용 원료 비율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사는 폐기물 발생을 선제적으로 저감하고,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부산물의 회수, 재활용, 재사용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④ 수질오염 및 수자원 사용

유성기업은 책임 있는 수자원 관리에 전념하며, 협력사 또한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질 오염을 방지할 것을 기대한다. 물 부족 지역에서의 물 사용과 폐수의 적정 처리를 특히 중요하게 관리한다. 또한 수자원 관리 범위에는 해저 및 해양 환경을 포함한 수자원이 모두 해당되며, 수질 오염, 물 사용, 수량(홍수·가뭄 등), 물 접근성 등과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유성기업은 지역 수자원을 위협하거나 인근 지역사회의 수자원 접근성 및 생태계, 해저·해양 환경에 피해를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

⑤ 토양오염, 토지이용 및 산림벌채

유성기업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건강한 토양 보존과 책임 있는 토지 이용을 지지한다. 유성기업은 토지 황폐화, 불법적인 토지 취득 또는 산림 훼손에 기여하는 어떠한 행위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협력사는 생태계 또는 지역사회의 생계를 해치는 조달 행위를 지양하고, 토지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⑥ 생물다양성

유성기업은 생물다양성 보호에 전념하며, 협력사에게도 주요 서식지 및 멸종위기종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완화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유성기업은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거나 생물다양성 보전지역을 위협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또한 생태적 균형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자원을 보전하는 책임 있는 조달 관행을 장려한다.

⑦ 소음·진동 및 환경위험 예방

유성기업은 원부자재 조달 과정과 관련된 환경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념하며, 협력사에게도 소음, 진동 및 기타 운영상의 영향을 책임 있게 관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협력사가 인근 지역사회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유성기업은 선제적 위험관리와 환경 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을 지지한다.

다. 윤리적 책임

① 윤리적 경영 및 기업의 정직성

유성기업은 사업 운영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 최고 수준의 윤리적 기업 행위를 유지하는 데 전념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i. 부패, 뇌물수수, 자금세탁 및 금융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EITI: 자원개발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 기준에 부합)

- ii. 세금, 수수료, 로열티 및 정부에 대한 기타 지불 내역의 공개 등 모든 비즈니스 거래의 투명성 확보
 - iii. 공정거래법 준수 및 반경쟁 행위의 방지
 - iv. 책임 있는 정치적 관여 및 이해상충 회피
 - v.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데이터 보호 법규 준수, 이해관계자 정보의 안전한 처리
 - vi. 지식재산권 존중 및 영업기밀 보호
 - vii. 경영 활동, 위험,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정직한 정보 공개 및 기록 유지
 - viii. 광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사기 행위 금지 및 공급망 전반에서의 정확한 추적 가능성과 책임 있는 조달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한 적극적 협력
- 모든 협력사는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고, 모든 관련 반부패 및 투명성 법규를 이행하며, 자사 운영 전반에 걸쳐 윤리와 정직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5. 책임 있는 광물 조달 관리 시스템

유성기업은 「분쟁지역 광물의 책임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리스크를 식별,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책임 있는 조달 관리 시스템 (Responsible Sourcing Management System, 이하 "RSMS")과 공급망 실사 절차(Supply Chain Due Diligence Procedure)를 구축하였다. 본 시스템은 OECD 부속서 II(Annex II)에서 정의한 리스크에 대응하고,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을 포함한, 국제 프레임워크 및 선도 산업 모범사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다.

가. 책임 있는 광물 조달 관리 시스템의 구축

유성기업의 RSMS는 본 정책과 「협력사 행동규범」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이는 책임 있는 조달에 대한 유성기업의 약속과 모든 협력사에게 요구되는 명확한 기준을 담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유성기업은 신규 협력사가 등록 및 계약 체**

결 이전에 본 정책의 준수를 확인하는 서명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광물의 원산지가 분쟁 또는 고위험 지역(CAHRA: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으로 식별된 경우, 협력사는 제3자 실사를 수행하거나 RMAP(RMAP: 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인증 제련소와의 거래만을 원칙으로한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은 「협력사 행동규범」에 통합되어 공급망 전반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강제 가능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RSMS는 공급망 실사 절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실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내부 조직 및 외부 이해관계자 간 주요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부 거버넌스 체계를 포함한다.

유성기업은 모든 거래업체가 본 정책에서 명시한 원부자재에 대해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며, 「OECD 실사 가이드라인」 및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그리고 본 정책 제7조에 따라 광물의 채굴, 거래, 취급 및 수출과 관련된 우려사항을 익명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에게 권장한다. RSMS의 일환으로, 유성기업은 공급망에 대한 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여기에는 상위 공급업체와 비즈니스 파트너를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이 포함된다.

나. OECD 부속서 II 리스크 범주의 식별 및 평가

유성기업은 원부자재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 원자재에 대해서는 완전한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유성기업은 원자재의 출처와 관련된 위험 신호(red flags) 식별을 포함하여 환경적·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상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유성기업은 협력사가 분쟁 및 고위험 지역(CAHRA)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지 여부, 고의적인 허위 정보 제출 여부, 책임광물에 대한 인식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 결과, 위험 신호가 식별된 협력사는 유성기업의 리스크 대응 메커니즘에 따라 관리된다.

또한 유성기업은 협력사 평가 설문(SAQs: Supplier Assessment Questionnaires)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인권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에 대해 주요 협력사를 평가한

다. 평가대상의 선정 및 모니터링은 유성기업의 내부 구매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수행되며, 모든 협력사는 「협력사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유성기업은 글로벌 규제 동향, 고위험 지역 분포,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전략적 조달 접근 방식, 이해관계자의 우려, 글로벌 인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관리 광물(priority minerals)을 매년 재검토한다. 새롭게 지정된 우선관리 광물에 대해서는 공급망 매핑 및 현장 실사를 수행하여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완화한다.

유성기업은 하위 공급망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사를 수행하며, 분쟁 및 고위험 지역(CAHR)에서 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강화된 실사를 적용한다. 강화된 실사에는 문헌 조사 확대, 현장 방문, 제3자 검증, 업계 공인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등이 포함된다.

유성기업은 분쟁 및 고위험 지역으로부터의 광물 원산지를 추적하기 위해,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분쟁광물 보고 양식(CMRT: 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확장 광물 보고 양식(EMRT: Extended Minerals Reporting Template)」, 「추가 광물 보고 양식(AMRT: Additional Minerals Reporting Template)」 등 RMI 보고 양식을 활용한다.

협력사는 유성기업의 요청 시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원자재의 원산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실사 수행, 시정조치 및 필요한 경우 구제조치(remediation)의 이행에 있어 유성기업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다.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대응

유성기업은 공급망 내에서 식별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완화 조치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측정 가능한 리스크 완화 계획을 수립
- ii. 이행을 위한 내부 책임 부서 지정, 성과 목표 및 지표 설정을 통한 이행 진척도 관리
- iii. 리스크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대응 조치 우선순위 설정

- iv. 완화 조치의 효과성 모니터링
- v. 리스크 평가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

CAHRA(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 위치한 협력사는 유성기업과의 거래 시, RMAP (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인증을 받은 제련소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협력사가 RMAP 인증을 받지 않은 제련소(SOR: Smelter or Refiner)로부터 원자재를 조달하고, 해당 제련소가 RMAP 평가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유성기업은 협력사에게 다음 조치를 요구한다:

- i. 실제로 공급된 원자재가 해당 비인증 제련소에서 유래했는지 여부를 재확인할 것
- ii. 공급망 내 비인증 제련소가 RMAP 평가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
- iii. RMAP 평가 참여를 거부하는 제련소를 유성기업의 공급망에서 배제할 것

협력사로부터 분쟁광물 또는 책임광물과 관련한 필수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공급망 리스크가 식별되었음에도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유성기업은 교육, 실사 등의 수단을 통해 공급망 역량을 강화하는 개선 활동을 추진한다. 그러나 협력사가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반복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을 전혀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유성기업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종료할 권리를 보유한다.

라. 제3자 실사 수행

유성기업은 공급망에 대한 위험 기반 실사를 수행하며, 협력사의 「OECD 실사 가이드라인」 및 「EU 배터리 규정」 등 관련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독립적인 제3자 검증 기관을 활용한다. 이러한 실사 결과에 따라 시한이 명시된 시정조치 계획이 수립되며, 이행 여부와 효과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된다. 유성기업은 제3자 검증 외에도 자체 실사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협력사의 자발적이고 충분한 협조를 기대한다.

식별된 red flag 협력사에 대해서는 리스크 수준에 따라 「협력사 행동규범」 개정, 교



육 지원, 직접적인 현장 실사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고위험 협력사에서 반복적인 문제 발생 또는 개선 부족이 확인될 경우, 유성기업은 요구 기준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의 실사 수행을 권고한다.

또한 유성기업은 협력사에게 Copper Mark, IRMA, RMI의 RMAP 등 공신력 있는 산업 이니셔티브 및 제3자 인증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장려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는 책임 있는 조달에 대한 협력사의 의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공급망 상위 단계의 리스크를 식별하고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유성기업은 공급망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RMAP 등 인증을 받은 제련소 및 정제소로부터의 조달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마. 책임 있는 조달에 대한 대외 공시

유성기업은 투명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책임 있는 조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시한다. 공시는 유성기업은 웹사이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이해관계자 대상 별도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접근 가능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시 내용에는 지속가능한 원부자재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와, 본 정책 이행과 관련된 성과 데이터가 포함된다.

공시 항목에는 책임 있는 조달 관련 정책 및 절차, 공급망 리스크 평가 결과(식별된 주요 리스크 포함), 고충 접수 및 처리 결과, 리스크 완화 및 지속적 개선 활동의 진행 상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유성기업은 관련 규제에 따라 공시 및 보고에 대해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투명성을 제고한다. 또한 임직원, 협력사, 일반 대중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내용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명료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6. 이행 및 감독

가. 거버넌스

주요 원부자재 조달 리스크는 경영진으로 구성된 위원회 또는 지정된 의사결정 기구의 감독 하에 관리된다. 해당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원부자재 조달에 관한 정책을 승인하고, 조달 관련 리스크를 검토 및 심의하며,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관련 이슈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를 통해 원부자재 조달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 최고 수준의 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제의 준수 여부 검토, 사업 영향 평가, 적절한 모니터링 및 예방 체계 구축, 관련 투자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 등이 포함된다.

구매부는 책임광물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부서와 협력하여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나. 교육

유성기업은 본 정책에 명시된 지속가능성 원칙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원부자재 조달에 관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목표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 내용에는 원부자재 조달과 관련된 주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리스크와,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공급망 운영에 대한 유성기업의 기대사항이 포함된다.

이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은 RSMS를 일상 업무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받는다. 여기에는 공급망 리스크의 식별 및 평가, 위험 징후(red flag)의 인지, 실사 요구사항에 대한 협력사와의 소통, 적절한 후속 조치의 이행 등이 포함된다. 유성기업은 본 교육을 통해 책임 있는 조달 원칙이 조달 실무에 내재화되도록 하며, 임직원들이 유성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원칙을 현장에서 준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유성기업은 1 차 및 2 차 협력사,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분쟁광물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및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에는 분쟁광물 관리의 배경, 주요 규제 동향, 유성기업의 분쟁광물 정책, CMRT 및 EMRT 등 보고 양식 소개, 관련 설문 계획, RMAP 인증 제련소의 활용 방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유성기업은 협력사 및 하위 협력사와의 공동 교육, 워크숍, 자료 공유 등을 통해 공급망 실사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노력은 협력사가 유성기업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개선과 공동 책임의식 확산을 목표로 한다.

7. 정책 위반 사항 보고

유성기업은 원부자재 조달과 관련된 우려 사항을 자유롭게 투명하며 안전하게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모든 임직원, 협력사, 수급인, 지역사회 구성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본 정책 위반 사항은 물론, 조달 과정의 지속가능성, 적법성, 윤리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보할 것을 권장한다.

가. 고충 제기

유성기업은 원부자재 조달과 관련된 고충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접근 가능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채널은 임직원, 협력사, 시민사회단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개방되어 있다. 또한 유성기업은 RMI의 온라인 고충 처리 메커니즘, RBA의 고충 처리 시스템, OECD 국가연락사무소(NCPs) 등 공식적으로 인정된 외부 비사법적 고충 처리 절차를 유효한 제보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 환경 위반, 책임 있는 광물 조달과 관련된 고충을 공급망 전반에서 포괄적이고 투명하게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나. 신고 채널

대표 신고 채널 :

- 구매부

전화 : 02-2054~1560,1

e-mail : khyoon@ypr.co.kr or ykcho@ypr.co.kr



다. 고충 처리

유성기업은 책임 있는 조달 및 기타 윤리적 이슈와 관련된 고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고충은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모든 제보는 관련 법령, 규제 지침 및 유성기업 내부 절차에 따라 기밀을 유지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 유성기업은 보복금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며, 선의로 고충을 제기한 개인에게 어떠한 불이익, 차별 또는 징계 조치도 가하지 않는다. 또한, 협력사 또한 유사한 고충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책임성과 개방성을 갖춘 조직 문화를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법적 또는 규제 위반 가능성, 지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기업 평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고충은 이사회 및 그 산하 위원회를 포함한 적절한 경영 또는 거버넌스 기구에 보고되어, 검토 및 대응 방안이 마련된다. 유성기업은 각 고충 사례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시정 또는 구제 조치를 취하며, 고충 데이터를 활용하여 책임 있는 조달 활동 전반의 지속적 개선을 추진한다.

8. 정책 및 RSMS 검토

유성기업은 본 정책 및 국제 기준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책임 있는 조달 관리 시스템(RSMS)의 성과와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RSMS는 최소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개정되며, 상황 변화, 관련 규제 개정, 공급망 리스크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보다 앞당겨 검토할 수 있다.

정책 개정은 관련 부서와의 내부 협의를 통해 진행되며, 유성기업은 글로벌 모범 사례 및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RSMS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본 정책은 공식적으로 발효된 날로부터 적용된다.

부록 - 협력사를 위한 참고 프레임워크

책임 있는 조달 및 실사에 대한 유성기업의 접근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유성기업은 다양한 국제 기준, 원칙, 협약을 참고하고 있다. 협력사 또한 관련 법적 요구사항 및 유성기업의 윤리적 조달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음 자료들을 검토하고 활용할 것

을 권장한다.

- 국제인권장전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 ILO 다국적 기업 및 사회 정책에 관한 3 자 선언
- OECD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 지침
- 분쟁지역 및 고위험지역에서의 책임있는 광물공급망실사를 위한 OECD 실사지침
- 유엔글로벌콤팩트 10 대 원칙
- 제품의 사회적 전과정 평가 가이드라인
- 생물다양성 협약 (COP VIII/28 – 생물다양성포괄 영향평가에 대한 자발적 지침)
- 파리 협정